

투자권유준칙

제정 : 2017. 5. 22.

개정 : 2020. 3. 13.

제1편 총 칙

제1조 [목적]

이 투자권유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에 따라 코리아신탁(주)(이하 “회사”라 한다)의 임직원과 투자권유대행인(이하 “임직원등”이라 한다)이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준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법시행령, 법시행규칙,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규정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규정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투자권유”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신탁계약(관리형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투자자”란 전문성 구비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 감수능력이 있는 고객으로서 법 제9조제5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일반투자자”란 전문투자자가 아닌 고객을 말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법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 이외의 자가 일반투자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회사가 이에 동의한 경우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4. “투자권유대행인”이란 법 제51조에 따라 협회에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제3조 [투자권유 및 판매 일반 원칙]

임직원등은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및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임직원등은 관계법령등을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거래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여야 한다.
3.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스스로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4. 임직원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회사 또는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편 투자자 구분 등

제4조 [방문 목적 확인]

-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 방문시 투자자의 방문 목적 및 투자권유 희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투자권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투자자가 원하는 객관적인 정보만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 [일반·전문투자자의 구분]

-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해당 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등은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일반투자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제3편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제6조 [투자권유를 받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의무]

-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아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려야 한다.
- ②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원금손실 가능성, 투자에 따른 손익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등 투자에 수반되는 주요 유의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7조 [투자권유를 받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준칙 적용 예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에게는 “제4편 투자권유 희망 투자자에 대한 판매”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회사에 [별지 제1호]의 투자자정보 확인서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고객
2. 임직원등의 투자권유 없이 회사에 신탁 또는 대리사무계약체결을 요청한 고객
3. 회사와 기존에 위탁자로서 신탁 또는 대리사무계약 등 거래경험이 있는 고객

제4편 투자권유 희망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제8조 [투자자정보 파악 및 투자자성향 분석 등]

- ①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자정보를 [별지 제1호]의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따라 파악하고, 투자자로부터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등은 ①항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임직원등은 원칙적으로 투자자 본인으로부터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대리인이 그 자신과 투자자의 실명확인증표 및 위임장 등 대리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는 경우 대리인으로부터 투자자 본인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위임

의 범위에 투자자정보 작성 권한이 포함되어 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임직원등은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일반투자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 하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그 거부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 ⑤ 임직원등은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로 간주하고 “제3편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절차를 따른다.

제9조 (투자권유 절차)

-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제공한 투자자정보를 고려하여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기존 투자자성향과 그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투자권유를 하여야 한다.
- ③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금융투자상품에 투자자가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투자가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 및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의 위험성을 알리고 해당 투자자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고지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

제10조 (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보호 기준)

임직원등은 고령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별지 2호]의 강화된 고령투자자 보호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투자권유시 유의사항)

- ①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
 - 2.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 3.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 4.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다만,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5. 투자자(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를 받아 투자를 한 경험이 있는 일반투자자는 제외한다)로부터 금전의 대여나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를 요청받지 아니하고 이를 조건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6. 관계법령등 및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금전·물품·편익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 ② 임직원등은 투자자의 투자자성향 및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투자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투자자에게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장기투자를 권유할 수 있다.
- ③ 임직원등은 투자자의 투자자산이 특정 종목의 금융투자상품에만 편중되지 아니 하도록 분산하여 투자할 것을 권유할 수 있다.

제12조 [설명 의무]

-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등(이하 “투자설명사항”이라 한다)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확인받아야 한다.
- ② ①항에 따른 설명의무는 단순 확인방식으로 이행할 수 없으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자필 또는 육성으로 진술하는 방식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1. 투자자 : 본인이 이해하는 상품의 특성, 최대 위험 등
 2. 임직원등 : 투자자의 상품 이해수준, 설명내용 등
- ③ ②에 따라 설명의무를 자필 방식으로 이행하는 경우에는 투자자 등이 자필로 기재한 신탁계약서(필요시 별도 자료로 대체 가능)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④ 임직원등은 ①항에 따라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복잡성 및 위험도 등 상품측면과 투자자의 투자경험 및 인식능력 등 투자자측면을 고려하여 설명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 ⑤ 임직원등은 ①항 및 ②항에 따라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주요 손익구조 및 손실위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①항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투자자에게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⑦ 임직원등은 ①항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⑧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추후에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도록 자신의 성명, 직책 및 연락처 등의 이용방법을 알려야 한다.

제5편 그 밖의 투자권유 유의사항

제13조 [계약서류의 교부 및 계약의 해제]

- ① 임직원은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서류를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내용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 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투자자가 계약서류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투자자가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계약서류를 받을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로서 투자자의 의사에 따라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제14조 [손실보전 등의 금지]

임직원등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2.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3.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4.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제15조 (판매 관련 자료의 보존 및 투자자 제공)

① 회사는 판매 관련 자료를 그 종류별로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12에서 정한 최소보존기간 이상 서면, 전산자료, 그 밖에 마이크로필름 등의 형태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판매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 해당 자료를 6영업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공가능일자를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2017. 5. 22. 제정)〉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5월 22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지침의 폐기) 이 지침의 시행과 동시에 기존 지침은 폐기하기로 한다.

부 칙(2020. 03. 13.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 03. 13. 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투자자정보 확인서

(투자자(위탁자) 작성용)

- 귀하는 「자본시장및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제⑤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전문투자자의 범위 등)에 의거 전문투자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에 따라 **일반고객으로 분류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일반고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에 비하여 상기 법률에 따라 투자권유시 엄격한 적합성의 원칙이 적용됨을** 알려 드립니다.
 - 고객의 투자목적, 재산상태, 투자내역,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투자권유
- 투자정보확인서는 회사가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 및 소득상황, 투자경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지식, 위험선호도 등을 감안한 적합한 투자권유를 하기 위하여 징구하는 서류로서, 고객보호를 위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귀하의 동의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고객님께서서는 설문 중 일부를 기재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기재하신 범위내에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정보 작성 (중 해당되는 □란에 √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 인)	총 자산	부동산	1억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5억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10억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50억원 이하		
		동 산	<input type="checkbox"/> 100억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100억원 초과 <input type="checkbox"/> 기 타 (기재 :)		
		총부채	백만원		
자산부채현황 (법 인)	총 자산	백만원	매출액	백만원	
	총부채	백만원	당순이익	백만원	
신탁거래목적	<input type="checkbox"/> 부동산의 개발 <input type="checkbox"/> 임대운용 <input type="checkbox"/> 분양 <input type="checkbox"/> 부동산의 종합적 관리 <input type="checkbox"/> 부동산의 소유 명의 관리 <input type="checkbox"/> 부동산의 처분 <input type="checkbox"/> 부동산의 담보제공 <input type="checkbox"/> 기 타 ()				
신탁거래경험	신탁거래상품 : 신탁거래기간 : ~		신탁상품 이 해 도	<input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위험에 대한 태 도	<input type="checkbox"/> 가장 비중있게 고려하는 것은 원본 보장이다 <input type="checkbox"/>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원본 손실도 감내할 수 있다				

※ “투자정보 확인서”의 작성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그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변경 또는 신규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투자자 정보제공 거부고객 확인사항 (해당되면 □란에 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상기 투자자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고 본인의 판단과 책임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위험은 본인이 감수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아울러 본인은 귀사가 본인에게 해당거래가 적격하다는 것을 확인하거나 승인한 것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확 인 합 니 다)

투자자 확인사항 (□란에 √ 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귀사로부터 신탁계약의 내용, 위험, 수수료, 계약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설명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본인은 회사의 설명을 충분히 들은 후 본인의 판단으로 본 신탁계약을 선택하였고, 신탁위험은 전적으로 본인이 부담하는 것임을 확인합니다. (확 인 합 니 다)

투자자본인 (필수기재) (서명, 날인)

담당직원 (필수기재) (인)

[별지 제2호]

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보호 기준

1. 고령투자자의 정의

- 가. 회사는 65세 이상을 고령투자자로 정의하고, 그 중 80세 이상은 보다 강화된 계약절차를 적용하는 초고령투자자로 정의한다.
- 나. 해당 연령에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사리분별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령투자자에 적용되는 계약절차를 준용하도록 한다.
- 다. 위탁(임)자가 고령이 아니면서 대리인이 고령인 경우와 위탁(임)자가 고령이면서 대리인이 고령이 아닌 경우도 고령투자자에게 적용하는 계약절차를 준용하도록 한다.
- 라. “조력자”란 초고령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주는 65세 미만의 가족, 후견인 등을 말한다.
- 마. 사리분별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란 다음 각 목을 참조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 ① 간단한 개념을 이해하거나 처리하는데 어려워하는 경우
 - ② 기억을 잃어버린 듯한 외관을 보이는 경우
 - ③ 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화하는데 어려운 모습을 보이는 경우
 - ④ 신탁계약에 따른 결과를 이해하기 어려워 보이는 경우
 - ⑤ 행동이 불안정한 경우
 - ⑥ 사회적 관계, 주변상황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는 경우
 - ⑦ 평소답지 않게 용모가 단정하지 않거나 건강증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등

2. 고령투자자 보호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

- 가. 회사 고령투자자 보호 기준 마련 및 임직원 교육
- 회사는 고령투자자 보호 기준을 마련하고, 신탁계약 프로세스 개선 및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수행한다.
- 나. “투자권유 유의상품” 지정
- ① 회사는 처분·담보제공·타익신탁 등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로 처분 및 수익권 변동이 있어 투자자의 재산이 감소되고, 투자금의 입금후 지출행위 등으로 투자금 원본 회수가 어려운 대리사무 등의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 유의상품”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② “투자권유 유의상품”은 처분특약 있는 관리신탁, 처분신탁, 담보신탁, 타익신탁, 투자금 및 매매대금 등의 자금관리대리사무의 신탁상품을 들 수 있다.

다. “투자권유 유의상품” 투자권유시 사전 확인

- ① 회사는 임직원이 고령투자자에게 “투자권유 유의상품”을 권유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해당 권유의 적정성을 사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해당 계약체결 담당자는 고객과의 직접적 면담(투자권유시 배석 등) 또는 전화를 통해 고객의 이해여부 및 투자권유의 적정성 등을 계약체결 담당자가 직접 (붙임1) “(초)고령 투자자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사전 확인하고 확인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③ 해당 계약체결 담당자가 사전 확인한 결과, 고객의 사리분별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상품을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을 중단하여야 하고, 상품이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과 회사가 투자권유할 수 없는 상품이라는 점을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라. 상품 개발 판매시 고령투자자 판매 위험분석

- ① 회사는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해당하는 신상품 개발시 고령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 ② 만일, 고령투자자와의 계약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중단한다.
- ③ 회사는 다른 회사가 개발한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해당하는 상품으로 계약하는 경우에도 고령투자자 보호 측면을 살펴보고, 고령투자자와 계약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중단한다.

3. 고령투자자 보호 관련 내부통제 강화

가. 교육 강화

- 회사는 임직원 대상으로 실시되는 각종 교육을 통해 내규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나. 가족 등 조력자의 연락처 확인

- 고령투자자의 경우 신변 또는 건강상태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령투자자로부터 사전에 조력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연락처를 확보해둘 필요가 있다.

다. 고령투자자 대상 마케팅 활동

- 고령투자자를 주요 대상으로 각종 설명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 고령투자자를 현혹할 수 있는 허위 과장정보, 투자광고물이 사용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4. 초고령자에 대한 추가 보호방안

가. 조력자와의 상담 또는 투자숙려기간 부여

- ① 회사는 초고령투자자와 “투자권유 유의상품”을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가족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초고령투자자가 가족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없거나 가족 등에게 투자사실을 밝히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 등을 대신하여 관리직 직원이 동석하여 초고령투자자를 조력 할 수 있고, 초고령투자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여부 등을 확인한다.
- ③ 회사는 초고령투자자가 가족 등의 조력을 받거나 관리직 직원의 동석을 통한 조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초고령투자자에게 영업점 이외의 장소에서 투자권유가 이루어지는 경우 또는 비대면 방식의 투자권유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초고령 투자자에게 충분한 투자숙려기간(1일 이상)을 부여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5. 상담내용 등의 기록·유지

- 계약담당자는 향후 분쟁 등에 대비 고령투자자와의 상담내용 및 (붙임2) “(초)고령 투자자 확인서” 등을 기록·유지·징구해야 한다.

(붙임1)

(초)고령 투자자 체크리스트

[계약체결 담당자 작성]

투자자 또는 대리인이 65세 이상 고령자인 경우, 투자권유 유의상품 가입시 계약체결 담당자는 해당 고객과의 면담을 통해 아래 사항을 확인하여 상품가입의 적정성 여부를 파악하고 상담내용을 직접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 인 사 항		예	아니오
1. 신탁재산 처분 가능성 등 인지여부	신탁재산이 제3자로 처분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신탁재산의 수익자를 제3자로 지정함으로써 신탁재산이 실질적으로 수익자에게 이전됨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2. 투자금 원본회수 불가능성 판단여부	투자금의 입금후 지출행위 등으로 투자금 원본 회수가 어려울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3. 투자권유 과정의 적법성	상담자가 상품을 부적절하게 권유하였습니까?		
4. 주요 설명내용의 이해여부	상담자가 상품의 기본적인 구조, 원본(금) 손실가능성, 중도해지 가능여부, 수수료 등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고객이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5. 건강 및 인지능력	현재 고객의 건강상태 및 인지능력(기억력, 판단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아래 항목 중 해당사항 있습니까? - 간단한 개념을 이해하거나 처리하는데 어려워하는 경우 - 기억을 잃어버린 듯한 외관을 보이는 경우 - 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화하는데 어려운 모습을 보이는 경우 - 신탁계약에 따른 결과를 이해하기 어려워 보이는 경우 - 행동이 불안정한 경우 - 사회적 관계, 주변상황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는 경우 - 평소답지 않게 용모가 단정하지 않거나 건망증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등		
6. 기타 상담내용			

확인일자 : 20 년 월 일

확인자 : 담당자 _____(서명)

(붙임2)

(초)고령 투자자 확인서

[투자자 또는 대리인이 65세 이상인 경우 모두 포함]

1. 투자권유 유의상품 가입상품 확인 미확인

본인은 본인이 선택한 금융투자상품의 구조가 복잡하고, 가격변동성이 크거나 환금성에 제약이 있는 투자권유 유의상품임을 안내 받았으며, 상품의 주요내용 및 위험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본 거래의 투자결과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이 부담할 것을 확인합니다.

2. 가족조력제도 활용 확인 확인 미확인

본인은 본인의 가족, 후견인 등으로부터 동 상품의 투자결정에 있어 충분히 상의하고 도움을 받아 투자하고자 합니다.

■ 조력자 정보

- 조력자 _____ 는(은) 상품에 대한 설명을 함께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 관 계: _____ 조력자: _____ 인(서명) 연락처 : _____

※ 금융투자상품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본인의 성명 및 연락처가 수집·이용됨을 동의합니다.

3. 투자숙려기간제도 활용 확인 확인 미확인

본인은 신중한 투자결정을 위하여 최소 하루 이상 투자숙려기간을 가졌으며, 투자결과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이 부담할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고객명 : _____ 인(서명)

대리인 : _____ 인(서명)